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88
----------	-----

제출년월일 : 2008. 4. .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제안이유

- 2008. 1. 28 직제개편에 따라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가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로 명칭 변경 및 기능이 확대됨으로써, 그 이용대상자를 속초시민으로 확대하고, 수강료 납부방법 개선을 통하여 수강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 1)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둠

나. 이용대상자 확대 (안 제4조)

- 1) 센터 이용대상자를 속초시민과 속초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

다. 사용료 및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및 반환 가능 (안 제5조)

- 1) 수입증지 납부 원칙 삭제
- 2) 부득이한 경우 중간 수강포기자 수강료 환불 조항 신설. 단, 신청월을 제외한 잔여 월 반환

라.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안 제6조)

- 1) 수수료 면제 대상자 추가
 - 가)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혼인한 외국인
 - 나) 2007. 1. 1 이후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교육생

2) 비영리법인·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대강당, 소강당”에 한함

마. 비용의 보조, 변상책임, 위탁관리,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시행규칙
(안 제7조부터 제10조)

1) 기존 조례와 같음

바. 부칙

1) 기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봄

2) 수강료 반환 적용시기는 2008. 7. 1 적용한다.

(이미 상반기 여성대학 수강료 수입증지 납부로 반환 불가)

3)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2008. 2. 14 ~ 3. 5) 실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기존 조례와 대비표

다.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 사본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터”라 함은 강당, 강의실, 조리실, 전산실, 재봉실, 놀이방, 휴게실 등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집회, 교육, 전시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시설 사용자가, “수수료”라 함은 교육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월별 수강”이라 함은 1개월 이상 운영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대상)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
2. 국가·지방자치단체
3. 속초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
4. 그 밖에 능력개발·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
3. 월별 수강중 취업·이사·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 당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수료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단체 사용에 있어서는 강당에 한정하며, 동일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월 1회에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익법인·비영리 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주소를 같이 둔 그 배우자
6.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혼인한 외국인
7. 2007년 1. 1이후 3자녀 이상을 둔 교육생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강생 수수료 면제는 월 2과목에 한정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사업 중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보조자료·재료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2. 시민대상 공연·전시행사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보조자료·재료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센터의 시설물·물품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시장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③(사용료 및 수수료 반환 적용례) 제5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른 적용은 월별 수강에 한정하여 2008. 7. 1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별 표 1】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수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1. 시설사용료			
가. 대강당	평일 주간	20,000	- 토·일·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징수
나. 소강당	“	10,000	-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징수 - 매 1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징수
다. 피아노 사용료	1회 30분	5,000	
라. 대강당 냉·난방비	1회 2시간	20,000	- 매 1시간 초과시마다 50% 가산징수
마. 소강당 냉·난방비	“	10,000	단, 2시간미만 사용시 2시간 사용료 징수
2. 수수료			
가. 교육생 수강료	1인1과목 1월	10,000	- 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으로 한다.
나. 유아 수탁료 - 수강생자녀	1인 1월	5,000	- 수탁시간은 1일 수강시간에 한함

기존 조례와 대비표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폐지)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이하 "여성교육문화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 개발과 문예활동 지원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의 범위)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사용범위는 강당, 강의실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터"라 함은 강당, 강의실, 조리실, 전산실, 재봉실, 놀이방, 휴게실 등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집회, 교육, 전시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시설 사용자가, "수수료"라 함은 교육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월별 수강"이라 함은 1개월 이상 운영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3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2(이용대상) ① (생략) 1. 속초시에 주소를 둔 여성 2. ~ 4 (생략)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속초시에 주소를 둔 남성도 교육 일부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사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시민 2.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폐지)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제정)
제5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u>속초시수입증지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u> ③ 제2항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반환할 수 있다.</u> 1. 수강신청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반환을 요구할 경우 2. 수강신청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 3. 여성교육문화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나 교육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제5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 3. 월별 수강중 취업·이사·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 당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수료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강당, 강의실 및 기타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단체사용에 있어서는 강당과 강의실에 한 하며 동일 단체에 대하여는 월 1회를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 1. (생략) 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모부자복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4. (생략)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신 설〉 6. (생략) 〈신 설〉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단체 사용에 있어서는 강당에 한정하며, 동일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월 1회에 한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공익법인·비영리 단체 3., 「한부모가족지원법」 4. (현행과 같음) 5. 주소를 같이 둔 그 배우자 6.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혼인한 외국인 7. 2007년 1. 1이후 3자녀 이상을 둔 교육생 8. (현행 6호와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강생 수수료 면제는 월 2과목에 한정한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폐지)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정)
제6조의2(비용의 보조) ① (생략) ② 시장은 제6조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보조자료·재료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 -----
제7조(변상책임) (생략)	제8조(변상책임) (현행과 같음)
제8조(위탁관리) (생략)	제9조(위탁관리) (현행과 같음)
제9조(강사초빙) (생략)	제10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현행과 같음)
제10조(시행규칙) (생략)	제11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